

「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」변경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안내

- ◆ 청소년기본법 하위법령 개정(23.12.26.)으로 대학 등이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 변경('27.1.1.시행)에 대비, 조기에 현장실습 과목을 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등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내용을 안내하려는 것임.
※ 현행 시행령 '26.12.31까지 과 개정령 '27.1.1. 시행 적용시점에 따라 자격검정 요건 등이 달라짐.

가. 자격검정 개요

- **(관련근거)** 청소년기본법(제21조), 시행령(제19조), 시행규칙(제4조)

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변경내용('27년)

- ▶ (자격등급) 1급, 2급, 3급('26.12.31까지) → 1급, 2급('27.1.1.부터)
- ▶ (1급 검정방법) 주관식·객관식 필기시험 → 객관식 필기시험
- ▶ (2급 검정방법) 객관식 필기시험(or필기면제) + 면접 → 서류 심사
- ▶ (2급 검정과목 변경) 8과목 → 9과목[8과목 + '청소년기관 현장실습'('130시간)]
※ 실습기관의 요건, 선정·취소의 기준, 실습 운영 방법 등 → 여성가족부 고시로 정함
- ▶ (이수학점 기준 신설) 과목당 이수학점 기준 없음 → 대학 3학점, 대학원 2학점 이상

- **(추진 경과)** '93년 시행 이후 '23년까지 4차 개정 추진

구 분	주요 내용
제도 시행('93)	• 사전연수제도 운영, 자격양성기관 지정(대학 및 청소년단체) • 자격양성 인원 제한
1차 개정('99)	• 사전연수제도 폐지 → 응시자격 개방 • 자격검정 후 사후자격연수제도 운영
2차 개정('05)	• 대학에서 검정과목을 이수한 경우 필기시험 면제 • 응시자격 강화(청소년지도사 종사경력 1년씩 추가)
3차 개정('10)	• 자격검정 위탁기관 변경 (한국청소년개발원 → 한국산업인력공단)
4차 개정('23)	• '27년부터 3급 폐지, 2급 검정과목에 '현장실습' 추가 • 실습기관 요건 등 실습운영의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 고시로 정함

- **(시행령 규정)** 현행 자격검정 요건은 '26년까지 유효하고, '27년부터 개정내용으로 취득해야 함.

⇒ 대학 등은 졸업시기에 맞춰 자격취득관련 이수과목을 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등 사전준비 필요. 특히, 휴학·병역의무 이행 등으로 남은 학기 내 이수과목 미편성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

구 분		(현행)법 시행령시행규칙(~'26.12.31)	(개정)법 시행령시행규칙('27.1.1. 시행)
자격등급		▶ 1, 2, 3급	▶ 1, 2급
1 급	응시자격	2급 취득 + 종사경력 3년* (* 2급 자격을 지니고 대학원에서 1급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·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 경력 인정)	
	검정과목	5과목 (청소년연구방법론, 청소년 인권과 참여, 청소년정책론, 청소년기관 운영, 청소년지도자론)	
	검정방법	▶ 필기시험(주관식·객관식)	▶ 필기시험(객관식)
2 급	응시자격	▶ 【양성 과정】 ① 대학 졸업(예정)자(동등수준 학력) /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(예정)자 → 2급 검정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 ② '05.12.31 이전 졸업자(대학 및 동등 수준 학력 취득자, 대학원) → 별표1의2에 따른 과목 이수. 다만, 대학원의 경우 필수과목에 한정 ▶ 【승급 과정(3급 → 2급)】 - 대상: 제한 없음 → 학력*에 따라 응시자격 경력요건 차등 * 대졸(경력 2년), 전문대졸(경력 3년), 3급 취득(경력 2년), 고졸(경력 8년)	▶ 【양성 과정】 ①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(동등수준 학력) /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자 → 2급 검정과목을 모두 이수 ② '05.12.31 이전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(동등수준 학력) 또는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자 → 별표1의2에 따른 구분별 과목 이수 + 별표2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이수 ▶ 【승급 과정(3급 → 2급)】 - 대상: '27.1.1. 제도 시행 전 3급 취득자 → “3급 취득 후 종사경력 2년 또는 현장 실습 이수” 중 어느 하나의 요건 충족
	검정과목	▶ 8과목 (청소년육성제도론, 청소년지도방법론, 청소년심리 및 상담, 청소년문화, 청소년활동, 청소년복지,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, 청소년문제와 보호)	▶ 8+1과목(「청소년기관현장실습」 추가) - 과목별 이수학점(대학 3학점, 대학원 2학점 이상)
	검정방법	① 검정과목 이 수: 면접시험(필기면제) ② 검정과목 미이수: 필기시험+면접시험 * 3급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	① 검정과목 이수: 서류심사

나. 자격요건 변경 등 세부사항 안내

① 『청소년기관 현장실습*』 과목 개설여부에 따른 자격취득 방법

* '25·'26학년도 교과목편성 시 법령에 따른 과목당 학점, 검정과목 명칭 등 유의

-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관련 인정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반영되어야 함.
- 실습과목의 명칭이 검정과목과 다른 경우 개설과목의 요건(부합성 여부 등) 심사·의견수렴·고시 개정 등 일정한 기간과 절차를 거치므로, 학생들의 자격 취득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됨.
- 따라서 해당 대학 등은 자격제도 개편을 계기로 교육과정 편성 시 입학 및 졸업시점 등을 고려하여, 학생이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과목당 학점, 과목 명칭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유의할 필요가 큼.

구 분	교과과정에 '현장실습' 과목 편성	교과과정에 '현장실습' 과목 미 편성
2025년도	○ 현행법령에 따른 자격 응시·취득 가능(~'26년) - 검정과목(8과목) '전공' 이수 : 면접시험(필기면제) ○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 응시·취득 가능('27년~) - 대상 : 졸업자(동등수준 학력)/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자 - 다만, 기 개설된 『청소년기관 현장실습』교과목을 포함한 9개 검정과목 모두 이수해야 함	○ 현행법령에 따른 자격 응시·취득 가능 - 검정과목(8과목) '전공' 이수 : 면접시험(필기면제)
2026년도	○ 자격취득 가능 : 개정법령 적용('27.1.1.시행) - 대상 : 졸업자(동등수준 학력)/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자 - 검증방법: 기 개설된 『청소년기관 현장실습』교과목을 포함한 9개 검정과목 성적증명서 등 제출 * (인정범위) 종전에 『청소년기관 현장실습』을 이수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봄. 다만, 다른 자격취득을 위한 현장실습과 중복인 경우 등에 대하여는 불인정 ⇒ 향후 실습운영 고시 등에 반영 예정	○ 자격취득 불가 - 대상 : 졸업자(동등수준 학력)/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자 - 검증방법: 『청소년기관 현장실습』과목을 추가로 이수한 후 9개 검정과목에 대한 성적증명서 등 제출
2027년도		

②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검정 응시 시기별 취득방법

① 사례 1 2026년까지 검정과목 일부 이수 후 '27년 이후 2급 자격검정 응시

- 대학(원)생(동등학력 포함) A가 '26년까지 2급 검정과목 중 일부를 이수하고 '27.1.1.이후 나머지 과목을 이수 후 졸업이나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자격검정에 응시하는 경우

▶ 자격검정 과목*을 '27.1.1. 이전에 이수한 경우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**으로 봄

* ①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[별표 2] “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” / ② 여성가족부 고시 「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」 제11조, [별표 1] “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”

**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3조

▶ '27.1.1 이후에 이수하는 자격검정 과목은 개정규정에 따라 과목당 이수 학점, 이수시간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. 따라서, 자격검정 서류심사 시 과목당 학점(대학·전문대학 3학점, 대학원 2학점)이나 신규과목(청소년기관 현장실습) 포함여부 등의 요건* 미충족 시 자격취득 불가

* 검 정 과 목(과목당 학점: 대학→3학점, 대학원→2학점)

8과목(종전)

청소년육성제도론, 청소년지도방법론, 청소년심리 및 상담, 청소년문화, 청소년활동, 청소년복지, 청소년프로그램과 평가, 청소년문제와 보호

+

1과목(신규)

청소년기관 현장실습*

* 130시간 이상 현장실습 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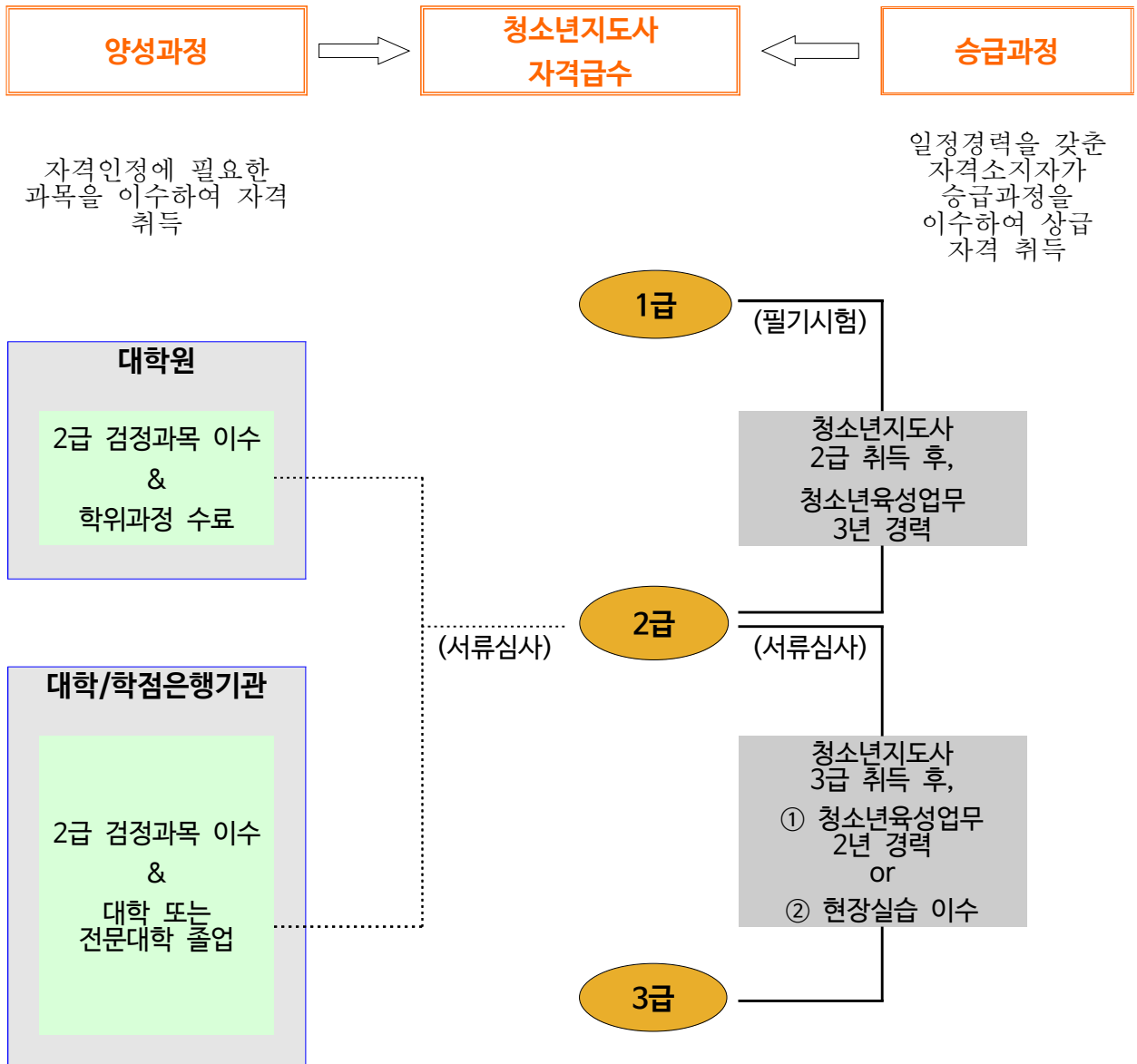
② 사례 2 2025년도 또는 2026년도에 2급 자격검정 응시

- 대학(원)생(동등학력 포함) A가 재학기간(~'26년) 중에 현행법령에 따른 자격등급(2·3급)별 검정과목(8과목)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고, '25년 또는 '26년도 졸업(예정)자 신분으로 자격검정에 응시하는 경우

▶ 2026년까지는 현행법령에 따라 자격검정에 필요한 서류제출(필기 면제) 및 면접시험에 응시하고, 합격 후 자격연수를 거쳐 2급 자격취득이 가능

※ 다만, '26년 내 불합격 시 '27.1.1 이후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신규과목(청소년기관 현장실습) 이수 및 졸업자 신분으로 자격검정에 응시해야 함.

다. 개정법령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



라. 「청소년기관 현장실습」 관련 주요내용

- 검정과목 명칭 : 청소년기관 현장실습
- 도입배경 및 목적
 -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의 실무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격검정의 방법에서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폐지하고, 그 대신 검정과목에 '청소년기관 현장실습'을 추가하게 됨.

- ‘청소년기관 현장실습’은 실습기관의 이해, 업무분석, 기관운영 프로그램 분석과 모의 프로그램 기획 등을 통해 청소년에 관한 이론과 실재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교과과정으로 운영

○ 청소년지도사 현장실습 운영기준(안)

※ 향후 실습운영관련 고시 및 지침 등 확정시 일부내용에 변경이 가능함.

구 분	운영 기준(안)
시 간	130시간
내 용	▶ 실습기관의 근로환경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실습하는 것을 전제로, ▶ 1일 8시간(09:00~18:00), 주 5회(휴일 제외)의 통상근로시간 내 진행 ※ 점심 및 저녁 등의 식사시간은 총 130시간의 실습시간에서 제외 ※ 현장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(직장인 등)을 고려하여 야간 및 주말도 실습 가능
현장실습 이수요건	▶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은 과목 형태로 수강 신청 후 실습기관을 통해 진행 ▶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교과목으로 편성된 실습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현장실습을 할 수 있음 ▶ 현장실습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교과목의 성적 산출 및 학점 부여 이전에 종료하여야 함. ※ 선이수교과목 등 교과목 이수요건 ⇨ 실습운영관련 고시 등으로 확정 예정